

# 교육·연구지원 장비대여 서비스 운영 지침

제정 2006. 10. 20.  
개정 2012. 8. 1.  
개정 2017. 11. 20.

**제1조(목적)** 본 지침은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(이하 “본부”이라고 한다)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본부 장비대여에 필요한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교육·연구지원 장비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 정의)**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장비”라 함은 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산 장비를 말한다.
- ② “개인사용자”라 함은 일반 용도로 장비를 대여 신청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을 말한다.
- ③ “기관사용자”라 함은 업무용으로 장비를 대여 신청하는 교직원을 말한다.

**제3조(대여장비)** 대여장비는 본부에서 교육·연구 업무(행정)용 지원을 위한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한정하며 장비보유 현황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수 있다.

**제4조(대여대상자)** 대여대상자는 부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(시간강사 및 자체직원 포함)과 재학생 및 기관으로 제한한다.

**제5조(대여사용료)** 사용자가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

**제6조(신청 및 대여)** 신청 및 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사용자는 본부 홈페이지(장비대여)에서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 후 예약신청을 한다.
- ② 장비대여 시 사용자는 본인이 직접 정보화기획운영과에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 및 약정서(서식1)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한 장비의 고장여부와 부속품을 반드시 확인 후 장비를 수령한다.
- ④ 대여 기간은 개인사용자의 경우 평일은 1박 2일, 주말은 3박 4일까지 가능하며, 1인당 월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기관사용자의 경우 1회 최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일반 용도인 경우 대여 가능한 장비는 1대/1회에 한하며, 업무 용도인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사전에 미리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반납)** 대여장비의 반납은 사용자가 직접 정보화기획운영과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하며,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(파손, 부속품 분실여부 등)를 확인 후 반납한다.
- ② 대여 중에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,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수리 혹은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대여 중에 장비를 분실했을 경우,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- ④ 기관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고 정보화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체)** 대여장비의 반납 연체 시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- ① 반납예정일 초과 3일 이내 : 1개월간 대여금지
- ② 4일 이상 ~ 1주일 이내 : 시정(2개월간 대여금지)
- ③ 1주일 초과 : 주의(3개월간 대여금지)
- ④ 2주일 초과 : 경고(6개월간 대여금지)

**제9조(파손 혹은 분실)** 대여장비의 파손 시는 동종 제품의 부품으로 수리하여야 하며,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분실한 경우에는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하고, 사용자가 작성한 [서식1] “장비변상계획서”를 제출받고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- ① 변상 반납예정일 이내 : 1개월간 대여금지
- ② 변상 반납예정일 ~ 1주일내 : 시정(2개월간 대여금지)
- ③ 2주일 이내 : 주의(3개월간 대여금지)
- ④ 2주일 초과 : 경고(6개월간 대여금지)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.  
다만, 적용이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장 비 변 상 계 획 서

소	속	
성	명	
주	소	
전	화	
대여사용기간		
고 장 장 비 명		
고 장 내 역		

상기 본인은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의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도중 본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의 이상이 생기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.

수리는 동종 제품의 부품으로 할 것이며 수리가 불가할 때에는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변상할 것이며 수리비 전액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대여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